국토교통부 | 보도자료 |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: 2023. 10. 19.(목) 11:00 이후(10. 20.(금) 조간) / 배포 : 2023. 10. 19.(목)

'전동킥보드 도로' 설계 지침 마련… '안전 최우선'

- 10월 19일부터 PM 고려한 「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」 개정안 시행

□ 전동 킥보드 등 **개인형 이동장치**(PM, 이하 PM)*의 **안전사고 예방**을 위해 마련한 「**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**」(국토부 훈령) **개정안**이 **10월 19일**(목)부터 **시행**된다.

* 개인형 이동장치(Personal Mobility): 시속 25km/h 미만, 30kg 미만의 킥보드 형태 장치 등

○ **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**을 도로 건설 및 보수 **현장에 적극 반영**하여 PM **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향상될 것**으로 기대된다.

□ 최근 PM이 차도,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를 넘나들며 통행하면서 **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***하고 있으나, PM을 고려한 **도로설계 지침은 미비한 실정**이었다. * 117건('17) → 2,386건**('22)** / 사망자수: 4명('17) → 26명('22)

○ 이에 따라 국토부는 **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**을 포함한 「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」(국토부 훈령) 개정(안)을 마련하였으며, 행정예고(8.21.~9.10.)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였다.

□ **「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」**의 **주요 내용은 다음**과 같다.

① 바퀴가 작고 회전반경이 크며 제동거리 소요 등 **PM 장치의 특성을 고려**하여 횡단보도 경계 간 **턱을 낮추고 도로 곡선반경을 보다 크게** 하고 최대 경사도 기준도 명시하는 등 **도로구조 시설기준을 규정**하였다.

② **보행자들과 PM 이용자 간의 상충을 최소화**하기 위하여 신규도로 건설 시 교통 특성에 따라 PM 통행로를 연석이나 분리대 등을 통해 **물리적으로 분리**토록 하고 PM을 고려한 도로 폭을 확대토록 하였다.

분리시설(안전 펜스)	분리시설(연석 분리)	분리시설(화단 분리)

③ 조명시설, 시선유도시설, 자동차 진입 억제시설 설치 등 **PM을 고려한 안전시설을 적용**토록 하였으며, 지하철역 주변 등에는 보관 및 충전 시설 등 **부대시설 설치도 고려**하도록 하였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개정된 「**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**」을 **각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에서**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**적극 적용하도록 독려**해 나가는 한편,

○ **신규 설치 도로 등을 중심**으로 **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**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도로국 도로건설과	책임자	과 장 오수영 (044-201-3888)
		담당자	사무관 최영록 (044-201-3907) 주무관 김로타 (044-201-3893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「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」 주요 내용

❶ 개인형 이동장치(PM)를 고려한 도로 설치 근거 마련

○ **(적용대상)** 자전거등의 교통량,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를 신설·개량할 때 적용

☞ 현재 자전거 도로 기준보다 PM의 주행특성 등을 고려, 상향된 기준 제시

❷ 개인형 이동장치(PM)를 고려한 도로 구조, 종·횡단 기준

○ **(평면곡선반지름)** 설계속도에 따라 결정

설계속도(킬로미터/시간)	최소 평면곡선 반지름(미터)
10	7
15	10
20	12
25	14

○ **(도로분리)** 자동차, 자전거 등, 보행자 등의 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분리대, 연석(경계석) 등을 활용하여 물리적으로 분리

* 현장여건 상 부득이 물리적 분리가 어려운 경우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 설치

○ **(추월차로)** 자전거와 PM 간의 속도 차이, 교통량 등 고려하여 설치

○ **(종단경사)** 오르막 종단경사 최대 10%, 내리막 종단경사 최대 5%

○ **(보차도 턱)** 자전거 횡단도가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 차이가 없도록 설계, 보도 배수를 위한 배수시설 설치 필요

❸ 개인형 이동장치(PM)를 고려한 안전 및 부대시설 설치

○ **(안전시설)** 이용자 안전과 원활한 주행환경을 위해 난간, 분리시설, 자동차 진입 억제용 시설, 조명시설, 시선유도시설 등 설치

○ **(부대시설)** 이용자 편의를 위해 지하철역 등 주요 환승시설 주변에 주차시설, 충전시설 및 보관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 가능